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 예비비 지출 현황

○ 지출결정액 : 1억 4천만원

○ 지출액 : 1억 4천만원

○ 이월액 : 없음

○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 : 없음

-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0.0%가 발생하였음.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 | 통 계 목 | 지출결정 액 ㉠ | 지출원인 행위액 ㉡ | 지출액 ㉢ | 이월액 ㉣ | 집행잔액 ㉤ =㉠-㉢-㉣ |
|------------|-------|----------------|---------------|----------|----------|---------------------|
| 계 | 배상금 등 | 140,480 | 140,480 | 140,480 | - | - |
| 고액 채납시세 징수 | 배상금 등 | 140,480 | 140,480 | 140,480 | - | - |

II . 검토의견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판결금 예비비 지출

- 재무국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2020.11.30.)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2021.7.14.)을 수용하고 판결금으로 예비비 1억 4천만원*을 지출(2021.8.18..) 하였음.

* 140,479,752원(원금 121,952,930원, 이자 18,526,822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 개요】

-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1928 부당이득금
- 청구내용 : 원고는 서울시가 압류 및 공매한 집합건물 부속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일부 취득은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공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됨에 따라 우리시가 교부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당 사 자 : 원고 신○○, 피고 서울특별시 외 3
- 판 결 금 : 140,479,752원
- 소송진행
 - 소송고지 : 2019. 5. 21.(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제기 가능성 고지)
 - 소제기 : 2020. 12. 8.(소장 송달일)
 - 1심 선고 : 2021. 7. 14.
 - 항소포기 방침 수립 : 2021. 8. 2.
- 판결주문
 - 원고에게, 우리시 배당액 121,952,930원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20. 12. 8.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금 지급 경과
 - 예비비 사용 승인 신청(재무과): 2021.8.10.
 - 2021.8.17.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배정(예산담당관)
 - 2021.8.18. : 예비비 집행
 - 2021.11.22. : 제287회 정례회 시 예비비 사용 보고

○ 재무국은 본 예비비 지출 사유로 본 소 피소(송달 2020.12.8.) 후 민사소송 판결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판결금에 대한 예산 확보가 곤란하고,

- 1심 판결 결과 항소 제기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체 예산의 이·전용도 불가하며, 연 15%의 지연이자 발생 등 사유로 신속히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2021.8.18.)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상세 내역 〉

(단위:천원)

| 부서명 | 예산과목 | | 예산액 | 금회 지출액 | | 승인일자 |
|---------|------------|-------------------|------------|---------|----------|----------|
| | 세부사업 | 통계목 | | 증 | 감 | |
| 예산담당관 | 예비비 | 일반예비비 (801-01) | 83,626,043 | - | △140,480 | '21.8.13 |
| 38세금징수과 | 고액 체납시세 징수 | 배상금 등 (305-01) | | 140,480 | - | |

〈2021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지출 결과〉

(단위: 원)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지출 결정일 | 지출액 | 지출잔액 |
|------------|-------------------|------------|-------------|------|
| 고액 체납시세 징수 | 배상금 등 (305-01) | 2021.8.13) | 140,479,752 | 248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 그룹 | 편성목 | 설정 (통계목 포함) | 비고 |
|----------|----------|---|----|
| 300 경상이전 | | | |
| | 305 배상금등 | 01. 배상금등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 |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 통상 소송사건의 경우 발생 및 종료시기와 결정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판결금 지급 기한의 경과 및 지연이자의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판결금을 지출한 것으로 사료됨.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 그룹 | 편성목 | 설정 (통계목 포함) | 비고 |
|-----|---------|---|----|
| 800 | 예비비및기타 | | |
| | 801 예비비 |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03. 내부유보금 1.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 |

- 1)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본 소송 1심 결과에 따른 항소 포기 방침 내용을 살펴보면, 집합 건물의 대지 지분 처분은 무효임이 이미 판시되어 있으므로 항소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 이는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는 원인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7. 선고, 2010다71578)로 이미 관련 판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르거나 무시하여 집합건물의 부속토지를 별도 압류 및 공매 처분하여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임.
 - 이처럼 법리에 어긋나는 무리한 체납처분으로 인해 공매 낙찰자의 취득이 원인무효가 됨으로써, 체납세액에 충당한 낙찰가액 또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환급하는 재정적, 행정적 낭비 뿐 아니라, 공매물건을 낙찰받은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쟁송을 통해 환급하는 불미스러운 행정 행태가 발생하였는바,
 - 체납처분 전반에 걸친 지방세 징수 공무원의 교육 등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 | | |
|--------|-------|-------|-------|
| 수석전문위원 | 김 태 한 | 입법조사관 | 최 석 훈 |
|--------|-------|-------|-------|

<참고 1>

예비비 지출요구서(재무국)

(단위:천원)

| 구 분 조 직 | 예 산 과 목 | | | | | 예산액 ① | 지출액 ② | 예산잔액 ①-② | 금후 소요액③ | 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
|---|----------------|-------------------------|--------------|--------------|------------------|----------|----------|-------------|------------|-------------------------|
| | 정 책 | 단 위 | 세 부 | 편성목 | 통계목 | | | | | |
| 재무국 38세금징 수과 | 조세 정의 실현 | 강력한 고액 채납시세 징수 | 고액채납 시세징수 | 배상금 (305) | 배상금 등 (01) | 0 | 0 | 0 | 140,480 | 140,480 |
| <p><input type="checkbox"/>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p> <p>①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를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작년 ' 20년 제기되고, 1심 선고가 당해연도에 일부 패소로 선고됨. -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소송 기간, 패소 여부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판결금에 대한 예산 확보 불가. <p>② 불가피한 지출 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 판결 검토 결과 항소 제기의 실익이 없고, 지연이자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우려로 판결금에 대한 신속한 지급 결정 <p>③ 이·전용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금 지급 관련 배상금 예산은 기편성되지 않았으며, 우리 부서의 '조세정의 실현' 정책사업의 전체 단위사업 예산을 검토한 바, '20년 대비 '21년 세출예산액의 전반적인 축소로 예산 부족한 상황에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전용 불가함.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p>2021년 8월 10일</p> <p>서울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p> </div> <p style="margin-top: 20px;">기획조정실장 귀하</p> | | | | | | | | | | |

<참고 2>

예산담당관 예비비 승인 공문(예산담당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비비 사용승인 알림(38세금징수과)

- 예산담당관-8659(2021.8.12.)호와 38세금징수과-18489(2021.8.11.)호 관련입니다.
- 공매 원인무효에 따른 배당금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요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비비 사용 승인내역

가. 요구부서: 38세금징수과

나. 회 계 명: 일반회계

다. 승인금액: 금140,480천원(금일역사천사집팔만원)

(단위 : 천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예산과목 | | 예산현액 | 승인액 | | 승인 후 예산현액 |
|-----------|----------------|------------|-----------|---------------|------------|---------|----------|------------|
| | | | 편성목 | 통계목 | | 증 | 감 | |
| 일반예산(예비비) | 예비비 | 예비비 | 예비비(801) | 일반예비비(801-01) | 83,626,043 | - | △140,480 | 83,485,563 |
| 조세징의 실현 | 강력한 교액 체납시세 징수 | 교액 체납시세 징수 | 배상금등(305) | 배상금등(305-01) | - | 140,480 | - | 140,480 |

끝.

예산담당관

수신자 재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주무관 예산4팀장 예산담당관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8716 (2021. 8. 13.) 접수 38세금징수과-18794 (2021. 8. 17.)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5층 /

전화 02-2193-6843 /전송 02-768-8824 / leesb2018@seoul.go.kr / 부문공개(5)

<참고 3>

본 부당이득금 반환 소 종국 결과

【소송_최종사항】

○ 서울시 1심 일부승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670) 부당이득금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2022.4.20.)하여 부당이득금 (12백만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2021.6.)하는 것으로 종료(법무담당관 '배당금 등' 예산 사용)되었음.

* (1심 판결 내용 중) 체납처분비 12,429,280원은 공매과정 진행에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거나, 서울시가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670

| | | | |
|---------------------|-------------------------------|------------------|------------------|
| 사건번호 | 2021나2029670 | 사건명 | [전자] 부당이득금 |
| 원고 | 신재욱 | 피고 | 서울특별시 |
| 재판부 | 제20-1민사부(나) (전화:(02)530-1207) | | |
| 접수일 | 2021.08.11 | 종국결과 | 2022.04.20 원고일부승 |
| 원고소가 | 12,429,280 | 피고소가 | |
| 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 상소인 | | 상소일 | |
| 상소각하일 | | | |
| 인지액 | 82,100원 | | |
|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 | 잔액조회 | |
| 판결도달일 | 2022.04.27 | 확정일 | 2022.05.12 |
| 법원 | 사건번호 | 결과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601928 | 2021.07.14 원고일부승 | |